

갈비가 올은집 백년회관 서서갈비	등 록 번 호	20180359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272
	최 초 등 록 일	2018-04-13	한신IT타워 1006호
	최 종 등 록 일	2025-03-05	dm9213@gmail.com

백년회관 서서갈비

정 보 공 개 서

주식회사 다이노에프에스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2 . . .

주식회사 다이노에프에스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시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본사주소: 경기도 광주시 경충대로 1801(장지동, B동 404호)

서울사무소 주소: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272 한신IT타워 1006호

대표전화: 1688-9213

대표팩스: 02-323-9213

가맹사업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가맹사업부 1644-9216

목 차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4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7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11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12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17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31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33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34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 35
별첨1 재무상태표	- 37
별첨2 설비 품목 세부내역	- 45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 호	주식회사 다이노에프에스	영 업 표 지	백년회관 서서갈비 외 1
설 립 일	2011. 12. 28	사 업 자 등 록 일	2012. 1. 12
대 표 자	조인권	대 표 전 화 번 호	1688-9213
법 인 등 록 번 호	134211-0126113	대 표 팩 스 번 호	02-323-9213
사업자등록번호	126-86-48090	주 소	경기도 광주시 경충대로 1801(장지동, 삼진글로벌넷 B동 404호)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최근 3년 동안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대표이사	조인권	백년회관 서서갈비 외 1	경기도 광주시 경충대로 1801(장지동, 삼진글로벌넷 B동 404호)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조인권	1688-9213	02-323-9213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사내이사	김우택	백년회관 서서갈비 외 1	경기도 광주시 경충대로 1801(장지동, 삼진글로벌넷 B동 404호)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조인권	1688-9213	02-323-9213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사내이사	임진철	백년회관 서서갈비 외 1	경기도 광주시 경충대로 1801(장지동, 삼진글로벌넷 B동 404호)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조인권	1688-9213	02-323-9213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바로 전 3년 동안 다른 기업을 인수·합병 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인수·합병 여부	기업명	영업표지	인수·합병일	주 소	대표자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을 인수함	해당없음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의 가맹사업 일부를 인수함	해당없음				

다른 기업에 가맹사업 일부를 인도함	해당없음				
다른 기업이 가맹본부를 합병함	해당없음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이하 백년회관 서서갈비라 합니다)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백년회관 서서갈비	남녀노소 모두에게 사랑받는 서서갈비(소갈비)와 돼지갈비를 주메뉴로 하는 숯불구이 전문 브랜드로 전통의 숯불갈비 맛에 백년회관만의 특제 양념과 숙성기술 노하우를 더 했습니다.
상 호	백년회관 서서갈비 OO점	“OO점”은 행정구역 및 지역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는 명칭으로 지정됩니다.
상표(서비스표)		출원 준비 중
광 고	-	-
그 밖의 영업표지	-	-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1년	3,159,247	2,013,385	1,145,861	5,021,487	-255,642	-347,882
2022년	3,164,665	1,985,208	1,179,457	5,953,796	1,657	27,063
2023년	3,021,134	1,791,602	1,229,531	6,655,633	105,848	50,074

그 근거자료는 별첨 1과 같습니다(2021~22년/2022년~23년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 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 임원	조인권	대표이사	2021.2.15 ~ 현재	(주)다이노에프에스 대표이사	대표이사
	임진철	사내이사	2016.9.23 ~ 2021.2.15	(주)다이노에프에스 사내이사	대표이사
			2021.2.15 ~ 현재	(주)다이노에프에스 사내이사	사내이사
가맹사업 비관련 임원	김우택	사내이사	2019.9.4 ~ 현재	(주)다이노에프에스 사내이사	사내이사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3년 12월 31일	1	2	17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가맹사업을 경영 하였거나 경영하고 있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구분	기간	사업내용
가맹본부	주식회사 다이노에프에스	가맹사업 경영	2012.11.1. ~ 현재	공룡고기 (등록번호:20100100051) 브랜드의 외식사업 경영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 만료일
백년회관 서서갈비	가맹계약 기간 내에 간판, 내·외부 사인물, 집기와 비품류에 사용을 허용	출원 준비 중			

위에 명시한 권리 범위 내에서 당사의 지식재산권을 사용하실 경우 원칙적으로 당사에서 디자인을 진행하고 제작하여 사용하도록 합니다. 가맹점사업자께서 별도의 작업을 필요로 하시는 경우 필히 본사의 승인을 받아 제작을 하셔야 합니다.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백년회관 서서갈비”의 상표권은 출원을 준비하고 있으며, 당사의 상표 등을 사용하는 권리는 관계법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Ⅱ. 가맹본부의 백년회관 서서갈비 가맹사업 현황

1. 백년회관 서서갈비를 시작한 날: 2018년 4월 13일

(직영점을 시작한 날: 2018. 5. 30)

2. 백년회관 서서갈비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	가맹사업 경영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주식회사 다이노에프에스	백년회관 서서갈비	임진철	2018.4.13-2021.02.15	경기도 광주시 경충대로 1801(장지동, 삼진글로벌넷 B동 404호)
		조인권	2021.02.15-현재	

3. 백년회관 서서갈비 업종

영업표지	업종	
백년회관 서서갈비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기타외식	돼지고기, 소고기, 가공육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백년회관 서서갈비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지역	2021. 12. 31.			2022. 12. 31.			2023. 12. 3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24	24	0	21	21	0	20	20	0
서울	6	6	0	3	3	0	2	2	0
부산									
대구									
인천	3	3	0	3	3	0	4	4	0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9	9	0	9	9	0	9	9	0
강원	3	3	0	3	3	0	3	3	0
충북	1	1	0	1	1	0	1	1	0
충남									
전북									
전남									

경북	1	1	0	1	1	0	1	1	0
경남	1	1	0	1	1	0			
제주									

5. 바로 전 3년간 백년회관 서서갈비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1	25	1	1	1	2	24
2022	24	0	1	2	1	21
2023	21	3	2	2	0	20

6. 백년회관 서서갈비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는 백년회관 서서갈비 외에도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고 있는 가맹사업의 바로 전 3년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개)

구분	상호/이름	영업표지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업종	가맹점/직영점의 수		
					2021.12.31	2022.12.31	2023.12.31
가맹 본부	주식회사 다이노에프에스	공룡고기	20100100051	한식	8/0	7/1	5/1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 기준

백년회관 서서갈비 가맹점사업자 한 명이 2023년에 올린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다 정확한 금액은 매출표의 상한과 하한 금액 사이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지역	2023년말 가맹점수	2023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 매출액(상한)		연간 평균 매출액(하한)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m²당	상한	면적 3.3m²당	하한	면적 3.3m²당	
전체	20	564,655	8,228	1,317,811	11,196	253,520	3,795	17매장
서울	3	해당없음						5곳미만
부산	-	해당없음						
대구	-	해당없음						

인천	3	해당없음						5곳미만
광주	-	해당없음						
대전	-	해당없음						
울산	-	해당없음						
세종	-	해당없음						
경기	9	509,226	7,994	787,291	11,153	253,520	5,360	9매장
강원	3	해당없음						5곳미만
충북	1	해당없음						5곳미만
충남	-	해당없음						
전북	-	해당없음						
전남	-	해당없음						
경북	1	해당없음						5곳미만
경남	1	해당없음						5곳미만
제주	-	해당없음						

당사의 가맹점사업자 연간 평균 매출액은 가맹점별 POS상의 매출액을 근거로 기재한 것입니다.

가맹점 중 영업기간 6개월 미만 가맹점에 대해서는 매출액 산정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영업기간 6개월 이상에서 1년 미만 영업한 가맹점에 대해서는 1년치로 환산(영업일-360일 기준)하여 매출액 산정에 포함하였습니다.

- 6개월 미만 영업 가맹점(3개): 인천청라점, 인천효성점, 시흥대야점
- 6개월 이상 1년 미만 영업 가맹점(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당사가 매출액 추정에 사용한 자료는 당사의 본사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으므로 귀하가 방문하여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8. [백년회관서서갈비]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	20개	1,388일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해당없음

10. 광고 · 판촉 지출 내역

당사에서 2023년에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광고비 및 판촉비를 가맹점사업자와 분담하는 기준은 27쪽을 참고하십시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 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구분	수단	기간	지출 비용			비고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합계			48,640	 (비공개)	-	
광고	소계		48,640	 (비공개)	-	
		(비공개)		(비공개)	-	 (비공개)

※ 위 가맹점 지출 비용에 표시한 금액은 백년회관서서갈비 가맹점에서만 광고 목적으로 지급한 금액입니다.

11. 가맹금 예치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기업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지점 또는 부서	주소	전화번호
기업은행	가양점(기업부서)	서울 강서구 등촌동 684-1	02-3661-8879

자세한 예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는 가맹금을 당사의 소정서식을 작성하여 해당은행에 계약 체결 후 2일까지 예치신청 하여야 합니다.



귀하는 또한 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가맹본부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서울보증보험과 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내용	비고
보험인(보험회사)	(주)서울보증보험	
보험계약자	가맹점사업자	
피보험인(보험금을 지급 받는 자)	(주)다이노에프에스	가맹본부
보험기간	가맹점사업자 영업 개시 전까지 보험가입을 해야하며, 보험기간은 최초 가맹계약 기간과 동일	계약 연장 시 보증 보험도 연장
보험금액	10,000,000원	
보장범위	가맹본부의 피해액 보장	
지급조건	가맹점사업자의 물류 상품대 지급 불이행	
보험금의 수령절차	가맹본부의 보험금 신청->보험회사 접수 -> 보험회사 접수 -> 지급여부 결정 ->보험금 지급	평균 1개월 소요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 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 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백년회관 서서갈비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과 인테리어 추가공사 비용, 식재료 등의 구매비용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물류이행보증금은 예치하지 않고 본사와 협약을 맺은 보증보험사(서울보증보험)를 통해 물류이행보증보험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14,300				
가입비	11,000	계약 체결 후 2일 이내	영업 개시 이전까지 계약 해지	가맹점 모집을 위해 소요된 실제 비용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된 경우	반환시 당사에서 정한 기준의 위약금을 공제
교육비	3,300		교육 시작 1일 이전 계약 해지	재료비 및 교육진행에 따른 인건비로 소요	교육이 시작되면 반환되지 않음

가맹비의 내용은 상권분석 및 점포개발 지원비(28%), 오픈지원비(14%), 최초 영업표지 사용허락(28%), 각종 매뉴얼 사용허락 및 자료제공의 대가(30%)로 구성됩니다.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 시 전액이 귀하에

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없음)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총계	13,000			
계약이행보증금	3,000	계약 종료 후 20일 이내	영업표지 사용료, 광고·판 촉비, 로열티 등의 미지급	계약 종료 후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
물류이행보증금	10,000	계약 종료 후 20일 이내	가맹본부가 공급한 원부 재료 대금의 미지급	보증보험 대체가능 미지급금의 담보

물류이행보증금은 보증보험으로 대체 가능하며, 보증보험으로 대체 시 보증금 총계는 3,000천 원입니다.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비고
합계	27,300	
가입비	11,000	
교육비	3,300	
계약이행보증금	3,000	부가세 없음
물류이행보증금	10,000	부가세없음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과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은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기준: 165m²(50평),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3.3㎡당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비고
합계			201,250	4,025			
집 기 비 품	주방집기	가맹본부	48,400	968	가맹계약서에 지 정한 바에 따름	설치 및 납품 5일 전 계약취소	
	홀집기	가맹본부	30,250	605			
	저장시설	가맹본부	10,450				
	기타용품	가맹본부	3,300				
	초도물품비	가맹본부	6,000				
인 테 리	시설공사	가맹본부	90,750	1,815		시공 5일 전 계약취소	
	간판	가맹본부	12,100				

	가맹본부, 협력업체	별도 책정	공사계약서에 지 정한 바에 따름	
추가공사	※ 추가공사 종류: 철거, 파사드, 테라스, 화장실, 입상덕트, 전기승압, 냉난방, 가스설비, 방풍실, 외부창호, 소방공사 및 각종 인허가 등 ※ 별도 협의가 필요하며, 가맹점사업자 부담			

위 표의 금액은 건물형태, 규모, 현장상황 등의 변수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외장공사 및 내부옵션공사, 철거공사, 냉·난방기공사, 계단공사, 가스공사, 전기증설, 소방공사 등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현장 실사 및 도면 작성 후 가맹본부와 상담 후 확정됩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가맹희망자 (점포가 없을 경우)	당사 가맹사업팀 배정 → 상담을 통하여 가맹희망자가 원하는 지역 파악 → 현장 조사 등 시장 분석 → 원하는 지역 내 매물 파악 → 추천매물 제시 → 가맹희망자의 가부 결정 ※가맹희망자가 당사 가맹사업팀의 추천점포 입지를 원하지 않는 경우 새로운 입지를 정할 수 있으나 영업이 늦어지는데 따른 손실은 가맹희망자의 부담입니다.
가맹희망자 (점포가 있을 경우)	당사 가맹사업팀 배정 → 현장 조사 등 시장 분석 → 입점타당성 결과 도출 → 당사 가부 여부 결정 → 가맹희망자의 계속 여부 결정 ※가맹사업팀이 입점타당성을 조사하여 입점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가맹희망자에게 계약 의사를 묻게 됩니다. 당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 가맹희망자에게서 원하시더라도 개설이 불가합니다. 부적합 판단이 난 경우 새로운 점포를 물색하는 것에 대한 여부는 가맹희망자의 판단에 따르며 이후 진행은 (점포가 없을 경우)와 같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특별한 기준 없음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만20세 이상일 것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 동의서 필요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 · 공급업체

백년회관 서서갈비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
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8) 한편, 귀하가 당사에 가맹점 개설에 필요한 가맹금을 포함한 총비용을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구분	총액	계약금	중도금	잔금
금액(천원)		50%	30%	20%
납부일		착공일-2일까지	착공일+14일까지	영업개시-3일까지
비고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히 광고분담금에 대한 세부 분담기준은 27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
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광고 분담금	가맹본부	광고 성격에 따라 총광고비의 50%, 25% 중 일부금액	청구 후 1개월 이내	반환 불가	광고제작비로 소요	
판촉분담금	가맹본부	행사별로 분담	판촉 종료 후 7일 이내	반환 불가	판촉비로 소요	
교육훈련비	가맹본부	550~1,100	교육 실시 10 일 이전	교육 취소시	인건비, 재료비 로 소요	교육 필요시 지급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가맹본부	협의	간판 변경 후 7일 이내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교체비용은 당사자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점포환경개선 비용	가맹본부	가맹본부 부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30페이지 참조
POS 사용료	협력업체	계약서에 따름	계약서에 따름	반환불가	장비사용료 및 유지비로 소요	
지연이자	가맹본부	연 18%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가맹점사업자가 금전 지급기한을 경과했을 시 부담
로열티	가맹본부	POS기준 월 매출액의 1.32% (부가세포함)	다음월 15일	반환불가	상권보호 영업표지사용료 운영관리비로 소요	

2) 구입 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 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 이라 한다)의 2023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 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독 항목	내 용	시기	비고
QSC 감독	QSC 매뉴얼 준수 여부 점검	비정기	문의: 가맹본부
행정자료감독	식품위생법, 근로기준법 등의 준수 여부 지도 및 점검	분기별 1 회	문의: 가맹본부
회계감독	상품매출입, 지급수수료(교육비, 로열티 등), 광고선전비, 도서인쇄비 등 회계 관련 점검	분기별 1 회	문의: 가맹본부

재고관리	상품 재고 및 관리 점검	비정기	문의: 가맹본부
------	---------------	-----	----------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의 과정에서 부담해야 할 별도의 비용은 없습니다. 단, 가맹계약의 연장과 함께 물류이행보증금을 증권으로 제출한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부담으로 갱신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할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동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백년회관 서서갈비의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귀하가 가맹본부인 (주)다이노에프에스에 지급해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양수인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보증금과 물류이행보증금도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운영권 양도에 관한 자세한 절차는 25쪽에 나와 있습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상호·간판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3일 이내에 이를 철거 내지 제거하여야 하며, 가맹본부가 제공한 운영매뉴얼, 영업관련 자산을 가맹본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일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손해배상액의 책정은

$$\text{청구금액(원)} = \text{가맹점의 면적(m}^2\text{)} \times \text{지체일수} \times 1,500\text{원}$$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지급한 계약이행보증금의 정산잔액과 정산서를 받을 때까지는 상호•간판 등의 철거 내지 제거 이행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비용은 계약종료에 책임 있는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가맹점사업자가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자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반품하고자 하는 경우, 물품의 오•훼손 등 관리상태, 유통기한 등을 고려하고 완전품만 반품이 가능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당사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귀하가 백년회관 서서갈비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 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

나) 주요품목 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 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이름	관계	경제적 이익의 대상이 되는 용역의 명칭	경제적 이익 내용	비고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계			해당없음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당사는 백년회관 서서갈비의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를 거래상대방에게 받지 않습니다.

(단위: 천원)

상품·용역	거래 상대방	대가 지불	경제적 이익의 내용	금액	비고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	:	:	:	
계					

2) 당사는 백년회관 서서갈비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어떠한 대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단위: 천원)

관계	상품·용역	거래 상대방	대가 지불	경제적 이익의 내용	금액	비고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	:	:	:	:	
계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 보호와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메인메뉴	수제돼지맛갈비	왼쪽에 기재된 이외의 제품을 판매할 수 없으며, 각 상품·용역의 구성에 따라 가맹본부 가 지정한 기준을 준수 해야 함.	1회 위반: 구두 경고 2회 위반: 2회 이상 서면 시정요구 3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주류 및 음료의 판매는 제한하지 않음
	수제돼지왕갈비			
	흑돼지왕소금구이			
	흑돼지삼겹살			
	소양념갈비			
	소생갈비			
	황제갈비살			
	와규꽃등심			
식사메뉴	갈비탕			
	소갈비살정식			
	돼지갈비살정식			
	해물된장찌개			
	함흥냉면(물/비빔)			
후식메뉴	함흥냉면(물/비빔)			
	계란찜			
	된장찌개			
	공기밥			

리필메뉴	꽃게장			
	새우장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주류 및 음료의 판매 구성은 귀하의 자율에 의하며,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추가하거나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사전에 가맹점사업자에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고객)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만19세 미만	주류	거래상대방별로 기재된 제품은 판매할 수 없음	1회 위반: 구두 경고 2회 위반: 2회 이상 서면 시정요구 3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귀하는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특정 상품·용역에 대해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권장가격(단위: 원)	가격 통보 방법	비고
메인메뉴	수제돼지맛갈비	11,900(200g이상)	변경 시 서면 통지	
	수제돼지왕갈비	13,900(280g이상)		
	흑돼지왕소금구이	13,900(180g)		
	흑돼지통겹	12,900(180g)		
	소양념갈비	16,900(160g)		
	소생갈비	28,000(250g)		
	황제갈비살	16,900(150g)		
	와규꽃등심	21,000(150g)		
식사메뉴	갈비탕	13,000		
	소갈비살정식	12,900		고기130g+찌개+공기밥
	돼지갈비살정식	11,900		고기150g+찌개+공기밥+계란찜

	해물된장찌개	6,000		
	함흥냉면(물/비빔)	6,000		
후식메뉴	함흥냉면(물/비빔)	4,000		
	계란찜	3,000		
	된장지개	2,000		
	공기밥	1,000		
리필메뉴	꽃게장	2,000		선택1회 무료리필
	새우장	2,000		
기타	상차림비	1,000(1인기준)		7세이하 무료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브랜드 이 동일성 유지 정책과 핵심역량인 “합리적인 가격”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충분한 협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와 협의 없이 별도의 가격을 책정하는 경우 가맹계약 갱신 불가 등 가맹계약 유지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돼지고기·쇠고기 등의 고기를 숯불에 굽는 형태로 정액·정량제로 판매	백년회관 서서갈비	해당없음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1km 단, 특수상권(백화점, 마트, 시장, 지하상가, 공항, 호텔 등)은 행정구역과 상관없이 별도의 영업지역으로 인정	가맹계약서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재조정 사유 발생 ② 가맹본부 검토 ③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④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⑤ 가맹점사업자 동의 ⑥ 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를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 ①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 ②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 ③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백년회관 서서 갈비'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 여부

해당 없음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 여부

해당 없음

7) 그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해당 없음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	-----------------------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100%	0%	0%	0%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100%	0%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백년회관 서서갈비의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최초 3년입니다. 가맹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2년 단위로 갱신 가능하며, 계약일로부터 만 10년 동안 갱신을 할 수 있습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36조 1항 1호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36조 1항 2호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36조 1항 3호
○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36조 1항 4호
○ 백년회관 서서갈비의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36조 1항 5호
○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36조 1항 6호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1. 개점교육을 이수하지 않거나 평가 미달의 상태에서 개점한 경우	19 조 1 항
2. 교육 무단 불참의 경우	19 조 2 항
3. 점포관리기준에 위배되는 사항의 시정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경우	21 조
4. 영업 양도 시 당사에 사전 통보 기준을 어긴 경우	34 조
5. 당사의 지적재산권을 부정하게 이용하여 당사의 신뢰를 훼손한 경우	10 조
6. 당사가 특정거래업체와 거래하도록 한 제품을 제 3 자에게 공급받은 경우	27 조
7. 당사가 지정한 품목 외의 품목을 당사의 승인 없이 판매한 경우	29 조
8. 판매가격을 당사의 승인 없이 변경하여 판매한 경우	29 조
9. 점포관리업무를 사전협의 없이 3 일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	29 조
10. 노후된 장비 및 설비의 교체, 보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13 조
11. 종업원이 지정된 복장을 착용하지 않은 경우	31 조
12.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영업일수를 지키지 않은 경우	30 조
13. 지정한 영업시간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키지 않은 경우	30 조

14. 매출과 손익을 파악할 수 있는 회계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32 조
15. 당사의 담당자에게 회계장부 및 거래자료 열람을 거부한 경우	32 조
16. 영업비밀을 누설하거나 누설하려는 의도가 명확한 행위를 할 경우	6 조
17. 당사의 설비 기준 및 인테리어 사양을 따르지 않은 경우	13 조
18. 당사의 승인없이 당사 지정 POS 거래처 및 VAN 사를 변경한 경우	23 조
19. 기타 계약서 상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계약관계를 지속시키기 어려운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37 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시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①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제37조 및 가맹사업법시행령 제 14조, 제15조
②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③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④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⑥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⑦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⑧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⑨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귀하의 동의를 얻어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 수정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관련 법규가 제정 또는 개정되어 계약서의 내용이 법규에 저촉되는 경우	40 조
○ 사업 내용의 중대한 변화로 전 가맹점사업자에게 시급하게 적용할 사안이 발생한 경우	40 조
○ 사전 구두협의로 계약내용의 변경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여 동의한 경우	40 조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검토 →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단,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기존 계약서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되, 재계약시에 이를 반영하여 재계약 하게 됩니다.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가맹점 운영권의 환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 양수인이 계약기간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을 것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문의: 가맹본부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양수인은 교육비 및 계약이행 보증금, 물류이행 보증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원할 경우 당사는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을 맺을 수 있으며, 신규계약을 맺을 경우는 가맹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가맹점운

영권에 대한 대리행사 및 업무위탁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아래의 조건에 해당할 경우 가맹점운 영권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당사에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그 사 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상속의 경우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파산자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구분	조건(가능 여부)	이전 범위	절차	기타 의무사항
상속	가맹점사업자의 사 망으로 상속인이 사후통지한 경우	모든 권리의무	상속 사유 발생 → 상속 개시일부터 90 일 이내에 상속의사 서면 통지 → 당사 에서 운영자격 심사 → 잔여기간에 대 한 가맹계약 작성 → 가맹점운영권 상 속 완료	교육수료 및 교 육비 지급
대리행사	불가능			
업무위탁	불가능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및 계약종료일로부터 1년간 귀하가 백년회관 서서갈비와 동일한 업종의 영 업을 하는 행위와 동일한 업종의 가맹본부를 설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단, 계약 종료 일 이후의 경업금지는 가맹계약서에 표시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가맹계약서 별첨[1]에 표 시된 영업지역)으로 정하며, 경업금지 약정을 위반할 경우 위약벌로 5,000만원을 배상해야 합니 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가맹계약서 제39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돼지고기·쇠고기 등의 고기를 숯불에 굽는 형태 로 정액·정량제로 판매	-	문의: 가맹본부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백년회관 서서갈비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11:00~23:00(12시간)	매주 6일 이상, 매월 26일 이상 연속하여 7일 이상 휴업 금지	문의: 가맹본부

영업시간은 위와 같이 지정하나, 필요시 가맹본부의 허가를 얻어 상권에 맞게 영업시간의 조 정이 가능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에게 불가피한 개인사정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가맹본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종업원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비고
3명 이상 매출액에 따라 가변	직접 근무	본사의 교육을 이수한 자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감독 항목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담당	비고
매장 청결	담당자 매장 방문 → 청결도 확인 → 미진한 부분에 대한 상담 및 지도 → 완료	비정기	가맹본부	
서비스	담당자 매장 방문 → 홀 접객 및 친절도 확인 → 미진한 부분에 대한 상담 및 지도 → 완료			
품질 관리	담당자 매장 방문 → 품질 확인 → 미진한 부분에 대한 상담 및 지도 → 완료			

당사는 가맹점포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고, 백년회관 서서갈비 브랜드의 이미지를 제고와 통일성 유지를 위하여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리·감독의 권한은 본사의 슈퍼바이저와 물류 배송을 담당하는 물류배송직원에게 있으며 권한의 우선순위는 슈퍼바이저에게 있습니다.

관리·감독의 범위는 크게 '운영지침 준수'와 '계약사항 이행 여부'입니다. 운영지침은 매뉴얼과 비정기적으로 전달되는 영업지침서를 포함합니다.

당사는 전사적인 마케팅계획과 귀하의 점포에 운영컨설팅을 위하여 귀하의 점포의 회계장부 열람 및 복사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POS와 별도로 장부를 기록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부담 기준

당사는 백년회관 서서갈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성격	부담비율		분담 절차	비고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광고 전체 행사	상품광고	광고비의 50%	광고비 50% 중 가 맹점 총매출액 비 율 따라 산정	광고 계획 공고 → 가맹점의 광고참여 여부 결정 → 가맹점 부담액 제시(명세서)	대중매체 광고 명절, Day 이벤트 행 사
	상품광고+ 가맹점모	광고비의 75%	광고비 25% 중 가 맹점 총매출액 비		

	집광고		올 따라 산정		
	가맹점 모집광고	전액 부담	없음		
판촉행사	할인행사	할인금액 50%	할인금액 50%	행사계획 공고 → 가 맹점부담액 제시 → 가맹점의 행사 참여 결정 → 행사 시행 → 종료 후 최종분담 금 확정	판촉행사 동의 절차 를 거친 후 전체 가 맹점 사업자의 70% 이상의 동의시 전체 적용
	증정행사	증정상품 출하가 50%	증정상품 출하가 50%		
	팸플렛 등 제작	판촉물 제작비용 50%	판촉물 제작비용 50%		
	기타 개별 행사	행사에 따라 유동적			
할인카드, 멤 버십 제휴서 비스	제휴행사	서비스로 인한 월 할인금액의 50%	서비스로 인한 월 할인금액의 50%	월 할인금액 제시 → 자료제출일로부터 10 일 이내 가맹본부 부 담액 송금	할인서비스 등의 종 료시까지

비용분담을 위한 매출액의 산정은 행사일이 포함된 달의 2개월 이전 3개월의 매출을 기준으로 하며 매출액의 책정은 pos 기록을 기준으로 합니다.

지역단위(광역시자치체 구역)의 행사일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부담액 부분을 분담합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판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본부에 행사의 내용에 대해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특히 광고·판촉물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지적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사전 승인이 필수입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가맹본부는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임원이 위법행위나 가맹사업의 명성,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배상 의무가 있다.

가맹계약서 제38조 제1항에 규정된 조치를 불이행할 경우 그 지체 기간에 대하여 가맹계약서에 명시된 가맹점 면적의 m²당 1,500원을 지연손해금으로 가맹점사업자에게 청구하게 됩니다. [청구금액 = 가맹점의 면적(m²) X 지체일수 X 1,500원]

또한, 가맹점사업자는 경업금지 의무 약정을 지켜야 하며 이를 어길 시 위약벌 5,000만원을 배상하도록 한다. (정보공개서 V항 8조 참고)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47일 내외	[11p~13p 참조]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D-47	
사업 설명·상담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D-46~45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필요시 실시 (약10일 소요)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D-34 ~ 31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D-30	
가맹금 예치	- 가맹금 예치	D-29(1일)	
점포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D-27 ~ 25(3일)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D-24(1일)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	D-24 ~ 5(20일)	
교육 실시	- 점포운영교육 실시	D-10 ~ 8(3일)	
집기 시설 입고	- 주방, 홀, 직화기 등 입고	D-15~2	
초도물품 및 pos	- 원료육 및 소스 입고, POS 설치	D-2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설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해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① 점포 선정 과정에서 적정한 매물이 나오지 않아 점포선정이 지체되는 경우
- ② 점포의 형태가 특수하여 실내외 공사에 애로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 ③ 교육 미 이수 및 평가점수가 60% 이하로 재교육이 필요한 경우
- ④ 공사 및 설비, 비품의 대금결제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과 협상으로 분쟁의 해결이 안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1588-1490, 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부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구분	내용
점포환경 개선사유	○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위생 또는 안전의 결함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비용 항목	○ 간판교체 비용 ○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가맹본부 부담비용 비율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20%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40%
지급절차	○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분할지급 시 절차> ○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 1차: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 2차: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 3차: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비용부담 제외사유	○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비고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해당 없음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 고
가맹본부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15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본부 부담	문의: 가맹본부
가맹점사업자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15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점 부담 (통상의 경영지도 비용을 초과한 부분에 한함)	문의: 가맹본부

4. 신용 제공 등 내역

해당 없음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백년회관 서서갈비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개점 교육	회사 소개 개점시 인허가 취득 방법 조리방법 / QSC 관리방법 식육관리 방법 POS 사용, 입금 방법 등	소그룹강의 이론교육 실습교육	가맹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영업시작 1주 이전	필수 교육 미이수 또는 교육평가 60% 미달 시 개점연기
보수 교육	신메뉴 가공 종업원 관리 실무 등	이론교육 실습교육	공고 후 1개월 이내 / 가맹점사업자 요청 시 수시	별도 지정 및 필수 이수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백년회관 서서갈비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비고
개점 교육	3일(이론-1일/실습-2일)	3,300	최초 계약시 이수
보수 교육	사안에따라 별도 지정	550~1,100	별도 지정 및 필수 이수

개정교육의 경우 귀하의 매장운영의 숙달을 위해 직영점을 통해 현장 실습교육을 추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추가 비용은 없으며, 기간 또한 귀하와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의 운영에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 당사자가 원하여 당사자 외 직원도 같이 교육을 받게 되면 인원 추가에 따라 비용도 추가됩니다.

4. 교육·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기한 내 개점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서 19조에 따라 개점 전까지 필히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점의 개점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만약 개점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임의로 개점을 하실 경우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기한 내 보수 교육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1주전까지 당사에 서면으로 불참사유를 전달하셔야 하며 무단으로 불참 시 가맹계약서 37조에 따라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Ⅸ.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해당사항 없음

당 사는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년, 월)

2023 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해당사항 없음	

4.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3 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해당사항 없음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로(1688-9213)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239 ~ 4241)**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첨 1]

<2021~23 년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전체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 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

[별첨 2] 설비 품목 세부 내역

■ 작업대 선반류 & 싱크류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 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

■ 그릇류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 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

■ 직화기류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 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